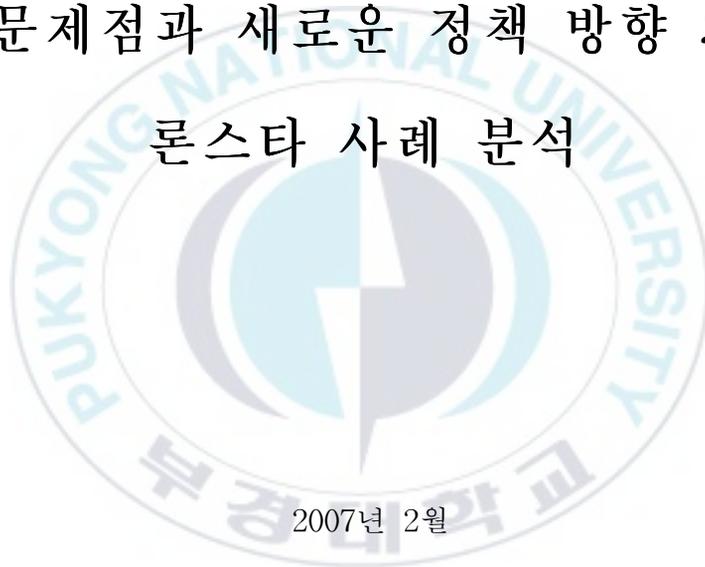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 방향 :

론스타 사례 분석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세무관리전공

문 근 나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 방향 :

론스타 사례 분석

지도교수 정형찬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세무관리전공

문 근 나

문근나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12월 20일

주 심 경영학박사 김 진 황 印

부 심 경영학박사 김 태 용 印

부 심 경영학박사 정 형 찬 印

◆ 목 차 ◆

<국문초록>	iii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현행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근거와 체제	5
1. 국내세법	5
2. 조세조약	6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10
4. 고정사업장	12
III.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주요 쟁점	17
1. 론스타의 한국진출 과정과 투자현황	17
2. 스타타워 매각 관련 주요쟁점	25
3. 외환은행 매각 관련 주요쟁점	40
IV.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외국 과세 사례	50
1. OECD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대책	50
2. 주요 선진국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노력	53
V.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61
1. 최근 과세관청의 대응방안과 법률 개정	61
2. 외국자본의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66
VI. 결 론	72
참고문헌	74
<i>Abstract</i>	76

◆ 표 목차 ◆

<표 1> 주요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1
<표 2>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 9
<표 3> 론스타 펀드의 구성현황 18
<표 4> 론스타의 국내 주요 투자내역 24
<표 5> 국세청 세무조사 일지 28
<표 6>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율 변동현황 41

◆ 그림 목차 ◆

<그림 1> 외국자본의 파트너십 투자구조 19
<그림 2> 스타타워 인수관련 거래 및 투자내역 25
<그림 3> 한-벨기에 조세조약 중 주식 양도소득 관련조항 29
<그림 4> 한-미 조세조약 중 주식 양도소득 관련조항 33
<그림 5> 재경부 관련 예규 34
<그림 6>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1-22 37
<그림 7> 외환은행 인수관련 거래 및 투자관계 42
<그림 8> 론스타 투자구조도 43
<그림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62
<그림 10> 법인세법 제98조의 5 64

<국문 초록>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 방향 : 론스타 사례 분석

경영학과 세무관리전공 문근나
지도교수 정형찬

IMF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국제화, 자유화에 따라 사모펀드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복잡한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를 이용하여 국내투자로부터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국제적 조세회피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05년 4월부터 6개월간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론스타로 대표되는 외국자본의 투자이익에 대하여 세무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론스타의 한국진출 과정 및 투자내역을 개관하고 국세청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세무조사의 과세근거와 관련 법규정을 알아보았다. 국세청은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스타타워 매각의 실제주체를 론스타 미국 본사라고 보고 한·미국 조세조약과 적용하여 과세한다. 론스타와 국세청의 주요 쟁점인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의 투자이익의 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관련하여 론스타와 국세청의 주요 주장과 차이를 비교하고 관련 근거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개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세방향에 대한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외국자본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점을 파악한 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 정책방향으로 첫째, 해외 투자펀드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세제도 확립과 둘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에 참여 셋째, 국내외 자본의 중립적 조세환경을 통한 국내투자제고로 나누어 각 정책 방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추진방안과 개선사항을 논하였다.

I. 서론

1. 연구목적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급속한 변모를 경험한다. 이 변화의 축에는 급격하게 진출한 외국인자본이 자리 잡고 있다. IMF이후 외국인자본은 관료와 다수 경제학자들의 외자 우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엄청난 규모로 유입되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6년 8월 2일 현재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주식 보유 금액은 247조 4077억원(시가 총액 635조 179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장회사 가운데 외국인자본 비중이 아래 <표 1>과 같이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며, OECD국 가운데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표 1> 주요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국가	한국 (‘06.8)	미국 (‘05.9)	영국 (‘04.12)	독일 (‘04.12)	일본 (‘05.3)	신진국	신흥국	세계
비율(%)	39.1	12.6	32.6	21.0	23.7	32.1	24.6	28.7

자료 : 금융감독원 “국가별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점검”(2006. 9)

이는 비단 주식시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된 이래(2000년) 한미은행(2000년), 외환은행(2003년)이 칼라일 펀드와 론스타 펀드에 매각되는 등 8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펀드의 소유가 되었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5,128만평(1억 6,922천㎡, 여의도의 20배)에 달한다.

이러한 주식, 은행 및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중심에 역외투자펀드(offshore investment fund)¹⁾가 있다. 90년대 이후에 전세계 역외투자펀드는

1)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로 해외 법 규정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 펀드 자금이 국내를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모은 자금으로 세계 각국 또는 산업에 투자해 운용됨. 따라서 투자주체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확산의 중요 요인 중의 하나로 역외투자펀드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즉, 조세피난처에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립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아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위장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외투자펀드 중심의 외국 자본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투자 차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조세 회피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취약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조세회피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사례는 이러한 외국자본의 과세논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역외투자펀드인 론스타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투자 3년 만에 약 4조원의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전례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정리해고나 금융기관의 직장폐쇄 등 성공적인 전략으로 단기적 수익을 거두었으나 조세회피 지역 내 투자국의 세법을 이용한 조세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4월부터 6개월간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외국자본의 투자이익에 대한 분석과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진단과 규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현재 외국자본 과세 논쟁의 중심에 있는 론스타 사례에 대해 조세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9월에 국세청이 발표한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론스타와 국세청 각각의 주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의 과세 가능성과 외국자본의 투자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조세조약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이다. 동 조약의 체결 목적은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국제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과세가 무역·국제적 투자 및 기술이전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근본적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즉 선진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²⁾

조세조약의 기본적인 목적인 이중과세방지는 조약의 일방 당사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당사국을 원천지국으로 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동시에 동일한 소득에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구제의 방편으로 원천지국에서 낮은 원천징수세율, 과세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³⁾ 이러한 조세상 혜택은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국의 거주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진출함에 있어서 당해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체약국 중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국가(제3국)를 선택(shopping)하여 그 곳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거나 그 곳에서 계약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조약의 혜택을 부당히 취하는 현상을 총칭하여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이라 한다.

론스타의 경우 한국과 벨기에간 조세조약에서 정한 혜택을 양 체약국의 거주자(내국법인을 포함)만이 누릴 수 있지만, 이를 누릴 수 없는 제3국인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가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중개법인을 통하여 한·벨기에간 조세조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세조약 남용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세법 또는 조세조약에서 금지규정이

2)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3, 758면.

3) 이태로, "Treaty Shopping", 조세법연구 I, 세경사, 1995, 5면.

없는 한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국제적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론스타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 각국의 세법상 내국법인, 거주법인의 판정기준을 전제로 하여 기업은 어느 국가의 인적관할권에 과세권이 속하는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즉 법인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가는 우리 헌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국제거래 상대국이나 인적 관할권이 속하는 국가의 선택은 어느 국가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조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입지조건을 비교·검토하여 모회사의 설립지, 자회사 이하의 관련회사의 설립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세부담의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기업은 조세조약망의 이용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회사의 설립지를 세부담이 유리한 국가로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조세조약망은 한정되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망은 62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론스타 사례의 경우와 역으로 국내 기업이 그 이외의 외국과의 거래에서 조세조약의 특혜를 이용할 수 없다면 세계 규모의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 때문에 거래대상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여 자기의 분신인 외국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자기가 거래의 당사자로 되는 것에 대신하여 그 외국자회사를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특혜를 실질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남용은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지만 조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은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⁴⁾

본 논문은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을 이용하여 스타타워 및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의 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 사례에 대해 세무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먼저 론스타의 한국진출 과정 및 투자내역을 개관하고 지난 2005년 9

4)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3, 763면.

월에 국세청이 발표한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과세 근거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론스타와 국세청의 입장 차이와 사실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의 과세방향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문제점을 검토한 후 주요 선진국의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 앞으로 개선·보완할 점과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기해 보기로 한다.

II. 현행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근거와 체계⁵⁾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자본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다. 투자이익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할 때에 론스타 사례와 같이 국내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1. 국내세법

가. 의의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세법 중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2005)

관한 과세의 조정사항인 이전가격 세제, 과소자본 세제, 조세피난처 세제,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상호합의절차 및 국가간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나. 과세대상 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종류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 열거·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둘째, 따라서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가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소득의 범위를 조세조약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2. 조세조약

가. 조세조약의 개념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그 공식명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며(양국간 조약, bilateral treaty),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title), 전문(preamble), 본문,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문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05. 3. 28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시행국이 62개국, 서명국이 2개국, 가서명국이 12개국이다.

나.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주민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니다.

다.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조세조약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경우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⁶⁾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6) OECD모델 조세조약 23조 : 다른 소득과 자본은 원천지국 혹은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납세자의 거주지국에서 오로지 과세한다는 원칙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예 들면 사용료(12조), 주식과 증권의 양도소득(13조4항), 민간부문의 연금(18조), 학생이 교육이나 훈련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20조), 주식이나 증권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22조4항)이 있다. 국제교통을 하는 선박, 항공기,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boat)의 운항이윤, 그 선박, 항공기, 배 및 그들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의 양도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위치한 국가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8조, 13조와 22조의 3항). 원천지국의 고정사업장에 안분될 수 없는 사업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7조1항).

<표 2>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국 과세 - 거주지국 과세규정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벨지움 ,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터키, 튀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예외) ·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정서제6조), 독일, 멕시코, 모로코(상장주식제외),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상장주식제외), 영국(상장주식제외),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의정서), 카자흐스탄(부동산75%이상, 상장포함), 파키스탄,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독일(양도비율5%이상), 멕시코, 미얀마(35%이상),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10%이상),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상장주식제외), 이탈리아, 일본(양도비율5%이상), 칠레(20%이상),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 1년 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 중 한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한국) 과세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개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 가능 · 조세조약상 규정없음(한국 과세가능) · 조세조약상 양국과세(한국 과세 가능) 	룩셈부르크(의정서), 태국, 브라질,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7)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가. 의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다.

나. 조세조약에 의한 우리나라 과세권 제약

조세조약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일정 한도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료의 경우 국내세법에서는

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또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앞의 예규 국조 46017-89 참조)

사용료의 대상인 자산·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사용료를 국내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되나, 조세조약상으로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그러나 2004.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조세조약의 경우와 같이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원칙을 일원화 하였다.

(2)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조약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

(3)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

조세조약은 일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보통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한다.

국내세법의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때에는 국내법상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국내세법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 때에는 그 제한세율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⁸⁾

8) 국조법§29

4. 고정사업장

가. 고정사업장 개념 및 의의

현행 국제조세조약은 조세피난처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주체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이 비과세지만,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귀속주의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상의 Permanent Establishment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고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한다.⁹⁾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사무소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예외 없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2) 제한세율 적용여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9) 법인세법§94, 소득세법§120

10) OECD 모델조약 5조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결정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하더라도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다른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무리 연락사무소라고 해도, 핵심 비즈니스가 그 사무소에서 이뤄지면 국내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나. 고정사업장의 유형

고정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일반 고정사업장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이에는 지점, 사무소, 판매장소 등과 같은 형태의 고정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인 고정사업장(조세조약상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됨)이 있다¹¹⁾.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지사, 연락사무소 등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되며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11) 법인세법§94①, 소득세법§120①

①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장소적 개념)

사업장소라 함은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을 말한다. 사업 장소는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이 없거나 사업수행에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존재(숙소, 호텔 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면 사업 장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 건물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한 그 건물 등이 당해기업의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는 불문한다.

②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The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기간적 개념)

사업장소의 고정이란 사업장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시설이 토지에 정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시설이 특정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족합니다. 도로나 운하의 건설, 수로의 준설, 파이프라인의 부설 등과 같이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그 위치가 변경되어도 관계없다.

③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것(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e fixed place of business, 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기업가, 그 종업원 또는 기타 기업의 지시를 받는 자가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활동이 반드시 생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업활동이 그 기업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그 활동이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그 사업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2) 간주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일정한 자를 종속대리인이라 한다.¹²⁾

이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원천지국에 제세를 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점 대신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실상 지점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속대리인의 유형으로는 자산보유대리인(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계약체결대리인(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와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¹³⁾.

종속대리인의 요건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계약체결대리인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12) 법인세법§94③, 령§133, 소득세법§120③, 령§180,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

13) 법인세법령§133, 소득세법령§180

14) 법인세법 통칙 94-133...2

①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사업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할 것

“반복적 행사”라 함은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내세법상 “외국기업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Ⅲ.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주요 쟁점

1. 론스타(Lone Star)의 한국진출 과정과 투자현황

가. 기업개요

론스타 펀드(Lone star fund ; 이하 론스타)는 1991년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 설립된 자산 2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폐쇄형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¹⁵⁾로 모집 및 운영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론스타는 텍사스 주의 별칭에서 딴 것이며, General Partner는 버뮤다 해밀턴으로 본점을 두고 있다.

2006년 현재 미국 내에서 7번째로 큰 펀드이며, 현재 미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사실상 전 대륙에 걸쳐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금의 80% 이상을 한국과 일본에 투자하고 있다. 론스타의 역사는 미국 저축대부 조합의 부실에 따라 생긴 정리금융공사(RTC) 자산 10억 달러를 1991년부터 운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당시 부실자산 운용의 노하우를 쌓는다. 론스타의 주요 투자가는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공공연기금, 대학기금, 보험회사, 은행지주회사 및 텍사스 석유제벌의 여유자금 등으로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구조조정 등에 투자했다. 일종의 벌처 펀드(Vulture Fund)¹⁶⁾ 성격이 강하다. 부실채권 정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투자금융 회사인 골드만삭스그룹이나 도이체방크 등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 미국에서 발전한 펀드의 일종으로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각종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참여시켜 투자하는 펀드이며, 주로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의 기업이나 성장 가능회사의 지분을 사서 대주주가 된 펀드가 경영진 교체, 직접적인 경영참여,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한 끌어 올린 뒤 주식을 팔아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얻고자 함

16) 벌처 펀드(Vulture Fund) : 부실한 각종 자산을 싸게 사들여 호전시킨 후 고가에 파는 펀드로 저평가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 운용하는 투자기금으로 죽은 동물만을 잡아먹는 독수리 과에 속하는 벌처의 이름을 딴 것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지만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제공.

현재 론스타는 다음 <표 3>과 같이 Lone Star Opportunity Fund, Lone Star Fund II, Lone Star Fund III, Lone Star Fund IV, Lone Star Fund V, Brazos Fund 등 7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표 3> 론스타 펀드 구성 현황

명칭	설립일	투자금액 (억달러)	주요 투자내용
Lone Star Opportunity Fund ¹⁷⁾	1996.11	4	미국내 부실채권·부동산 기업구조조정
Lone Star Fund II	1998.04	12	IMF후 태국,일본,한국 부실채권
Lone Star Fund III	2000.11	22.5	일본 도쿄쇼와은행, 한국 스타타워
Lone Star Fund IV	2001.12	42	한국 외환은행
Lone Star Fund V	2004.09	50	
Brazos Fund	1995.03	2.5	

자료 : 론스타 펀드 홈페이지, www.lonestarfunds.com

스타타워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III, IV는 버뮤다를 통해 들어왔다. 즉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는 곳은 조세 회피지역인 버뮤다이다. 론스타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론스타가 지금까지 운용중인 7개 펀드 중 II, III, IV, V, 4종류 펀드의 본점이 버뮤다로 되어 있다. 론스타 펀드의 본사는 미국 텍사스이지만 론스타는 버뮤다라는 조세회피지역에 의결권 100%를 가진 경영참가자(GP : general partner)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없는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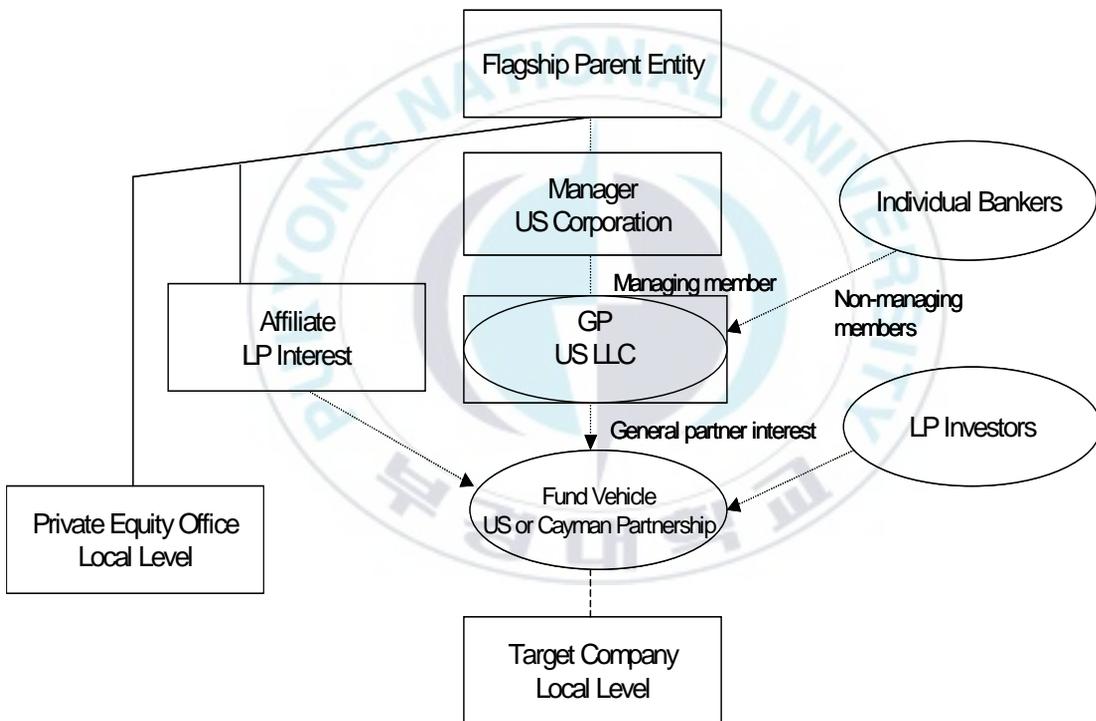
론스타 등 해외투자펀드는 <그림 1>과 같이 파트너쉽¹⁸⁾을 이용한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가진다.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GP(General Partner)가

17) Lone Star Opportunity Fund 이전에는 1991년 설립된 첫펀드는 'West Cost Equation Partners'를 비롯 3개 펀드가 있었으며 주로 미국 내 부실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

18) 미국의 "Uniform Partnership Act(파트너쉽통일방안, 통일조합법)" 제6조에서 파트너쉽을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로 정의. 반면 미국 연방세법 RC section 761에서는 "법인(Corporation), 신탁(Trust), 유산재단(Estate)이 아닌 신디케이트(Syndicate), 그룹(Group), 풀(Pool),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기타 법인 이외의 조직"으로 정의.

1%, 지분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LP(Limited Partners)와 관련 투자기관이 99% 투자하여 Holding Company를 설립하여 투자한다. GP와 LP는 다시 개별적으로 유사한 복잡한 투자구조를 가지고 미국→버뮤다→룩셈부르크→벨기에 등 여러 저세율 국가를 경유하면서 출자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복잡한 투자 구조는 결국 세후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세 문제 때문이다.

<그림 1> 외국자본의 파트너십 투자구조



나. 론스타의 한국 진출 및 투자 현황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1달러 800원대이던 환율이 몇 달 만에 1,600원대로 경추 뛰었고 외국인 투자자금은 급속히 이탈했으며 기업이나 국가나 국내외 차입은 불가능했다. 기업이 연쇄도산하자 금융기관들도 자금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금리가 급등, 실물경제까지 파탄에 이르렀다. 미국의 S&L 부실이 금융 분야에 국한된 것인 반면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실물경제까지 붕괴된 총체적 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를 포함한 벌처펀드들은 한국 정부 관련자들은 물론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IMF, 세계은행,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인사들로부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마침내 투자결정, 1998년 4월 론스타는 12억 달러를 모집해 론스타 펀드Ⅱ를 발족시켰다.

론스타의 한국 내 첫 공식투자는 외환위기 발생 1년만인 1998년 12월에 일어났다.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464억 원의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인수한 것으로, 성업공사로서도 첫 해외매각이다. 실제로 론스타가 투입한 금액은 1,409억 원이고 이 거래에서 성업공사는 376억 원의 손실을 봐 혈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파트너가 삼정KPMG이다. 회계법인인 삼정은 회계업무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역할까지 도맡아 론스타의 투자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해 삼정은 15년 경력의 김성은 변호사 등 두 명의 미국 변호사를 1988년 영입했다. 당시 삼정은 국제 컨설팅 사업과 외자유치 국제법무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해 이들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장법무법인과 같은 로펌이 미국변호사를 영입하는 일은 있었으나 회계법인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당시만 해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성업공사와의 부실채권 매입 계약도 김 변호사의 주도 아래 삼정이 대리인 역할을 했다.

삼정의 컨설팅 아래 론스타는 성업공사와의 첫 계약 이후 공격적인 투자를 펼친다. 이듬해 2월초 론스타는 미국 론스타 국내법인인 론스타어드바이저코

리아와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스코리아 한국법인을 영풍빌딩에 세웠다. 외국펀드로서는 처음으로 성업공사와 공동출자로 자산관리회사인 허드슨-캠코도 설립했다. 론스타어드바이저스코리아의 역할은 각종 투자결정이고 허드슨은 그에 따른 자산관리 및 처분이 주된 역할이다. 허드슨 캠코는 CRC¹⁹⁾ 업무를 맡았다. 스타타워 30층에 있는 한국법인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어 론스타의 국내 활동 중 대부분은 베일에 가려져있다. 미국에서도 외부에 경영방침을 일체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론스타어드바이저스코리아와 허드슨어드바이저스의 역할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론스타에 적을 둔 적이 있는 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허드슨 직원들은 론스타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들도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기사들을 보고 론스타의 국내 활동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론스타코리아의 사업은 이처럼 철저한 비밀유지를 전제로 진행된다.

론스타코리아 설립은 미국 하버드대 MBA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리(Steven Lee, 한국명 이정환)에 의해서다. 그는 론스타 미국 본사 회장인 존 그레이켄 회장과 함께 론스타를 만든 창립멤버이자 한국 컨트리매니저로 알려져 있다. 그는 허드슨의 대표로 미국 부동산중개회사 브룩힐리어파커 부사장과 아세아중금 전무를 지낸 차정하씨를 영입했다. 이렇게 진용을 갖춘 론스타는 최초 기업구조조정보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집중했다. 앞서 5,464억 원어치의 부실채권 매입에 이어 1999년 6월 성업공사로부터 1조388억 원의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5,249억원(채권액의 50.6%)에 매입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골드만삭스와 함께 성업공사의 신설 자산관리사 파트너로 선정돼 장부가 3천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았다. 론스타와 성업공사의 돈독한 관계는 결국 심광수 성업공사 부사장의 론스타 스카우트로까지 이어졌다. 론스타와의 최초계약 이후 7개월 만에 성업공사 부사장 심광수를 영입

19) 기업구조조정 작업, 부도기업을 대상으로 회의 등 회생방안을 마련한 뒤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비싼 값에 되파는 업체

했다. 심 부사장은 외환위기가 터지자 성업공사로 자리를 옮기고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미국 뉴욕, 시카고, 델러스, 보스턴 등지를 방문했던 인물로 전 세계를 돌며 부실채권을 팔았다. 그런 그가 론스타코리아의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심광수씨를 영입한 후 론스타는 성업공사만이 아닌 은행, 신용금고 등으로 영업 창구를 다각화했다. 산업은행,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 및 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 사장들과 개별 접촉을 갖고 부실채권 매입제안서를 발송한다. 먼저 1999년 11월 조흥은행이 7,600억 원어치의 무수익여신(NPL)²⁰⁾을 론스타에 팔았다. 같은 달 한빛은행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론스타를 합작 자산관리회사(AMC)²¹⁾ 파트너로 선정한다. 심광수 회장의 전 근무지인 산업은행도 JP모건과의 AMC 설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론스타-메릴린치 컨소시엄을 파트너로 선정했다. 1999년 12월에 성업공사가 경매에 부친 1조226억 원어치의 부실채권 9묶음 중 1묶음(장부가848억원)을 209억 원에 가져갔으며, 평화은행으로부터는 4,600억 원 규모의 무수익여신을 매입하고 유상증자로 120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조흥은행은 2000년 1월 론스타와 합작으로 AMC를 설립했다. 2000년 6월에는 한빛은행으로부터 2,109억 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였고, 산업은행과는 합작회사인 'KDB-론스타'를 설립했다. 7월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607억 원의 부실채권을 183억 원에 매입했으며 쌍용양회와는 1,000억 원 규모의 ABS²²⁾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에 합의하고 4,790억 원의 부실채권을 2,539억 원에 사들였다. 이 밖에 서울은행으로부터 2,000억 원(2000.11), 조흥은행으로

20) 무수익여신 (NPL : Non-performing Loans)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 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중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흐름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

21) 자산관리회사 (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 법정관리나 회의를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 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동시에 부동산 개발,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도 함

22) 자산유동화증권 (ABS : Asset Backed Securities) :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Originator)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함

부터 1,360억원(2000.12)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으며, 동양증권 여의도사옥을 650억원에 매입했다.(2000.12)

최초 론스타펀드Ⅱ를 모집한 론스타는 이를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태국, 한국, 일본에 나눠 투입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자 2000년 11월 투자금을 두 배로 늘려 론스타펀드Ⅲ(22억5천만 달러)을 다시 이 세 나라에 집중 투자한다. 한국에서 론스타펀드Ⅲ 자금은 동양증권 사옥, 현대 I타워(현 스타타워) 매입 등에 쓰였다.

2001년 1월 콘트롤타워인 론스타 델러스 본사는 일본 정부가 약 7천억엔(약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론스타재팬이 1998년 파산했던 도쿄쇼와은행을 인수하기도 한다. 2001년 들어 론스타는 부실채권 매입을 계속하면서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I타워를 인수했다. 메릴린치와 함께 예보로부터 6,246억 원어치 부실채권을 매입했고(매입가 2,860억원), 조흥은행으로부터도 리스채권 4,099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며 한빛은행 부실채권 5,731억원을 도이체뱅크와 나눠가졌다. 예보의 종금사 부실채권 입찰에도 참가, 장부가 6,295억원 부실채권(매입가 1,931억원)을 GE캐피탈 등 4개사와 나눠 가졌다. SKC 여의도사옥도 660억 원에 샀다.

2001년 최고의 거래는 역삼동 소재하는 현대산업개발의 I타워 인수로 그 해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632억원에 인수, 스타타워로 이름을 바꾸고 론스타 한국법인 사무실들을 모두 이곳으로 옮겼다.

2001년 말 론스타는 한국에서도 은행인수에 착수한다. 2001년 11월, 론스타펀드Ⅲ의 약 2배 규모인 42억5천만 달러(약4조8천억 원)의 론스타펀드Ⅳ를 조성했다. 한국투자는 약 20%(약 9,6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론스타는 먼저 서울은행 인수에 뛰어들었으나 인수 2과전에서 탈락, 하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02년 말 한빛여신을 인수한다. 2000년 2월 산업은행과 50대50의 지분을 갖는 자본금 70억 원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KDB론스타(현재 합작청산)를 2003년 말 지분 전량 매각하면서 4년 만에 약 50%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같은 해인 2003년 극동건설을 1476억원으

로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한 뒤 상장 폐지시키고 극동빌딩을 팔아 1583억원, 고배당으로 240억원, 유상감자로 65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론스타의 국내 주요 투자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론스타 국내 주요 투자 내역

98년 12월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5,464억원 매입(투자금액 1,409억원)
99년 06월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1조388억원 매입(투자금액 5,249억원)
99년 07월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3,000억원 매입
99년 11월	조흥은행 부실채권 7,600억원 매입
99년 12월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848억원 매입 평화은행 부실채권 4,600억원 매입, 유상증자 120억원 참여
00년 06월	한빛은행 부실채권 2,109억원 매입
00년 07월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607억원 매입(투자금액 183억원)
00년 08월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4,790억원 매입(투자금액 2,539억원)
00년 11월	서울은행 부실채권 2,000억원 매입
00년 12월	조흥은행 부실채권 1,360억원 매입, 동양증권 여의도사옥 650억원에 인수
01년 02월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2,860억원 매입, 조흥은행 리스채권 4,099억원 매입
01년 03월	SKC 여의도 사옥 660억원에 인수
01년 06월	현대산업개발 역삼동 I타워 6,632억원에 인수
01년 10월	한빛은행 부실채권 5,731억원 도이체방크와 나눠 인수
01년 11월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6,295억원 GE캐피탈 등과 나눠 인수
02년 12월	한빛여신 3,347억원에 인수
03년 03월	스타리스(옛 한빛여신) 4,892억원 부실자산 매입
03년 05월	극동건설 2,706억원에 인수
03년 06월	신한신용정보 지분 49% 인수
03년 09월	외환은행 지분 51% 1조3,832억원에 인수 우리카드 부실채권 4,318억원 등 카드채권 장부가 2조원 이상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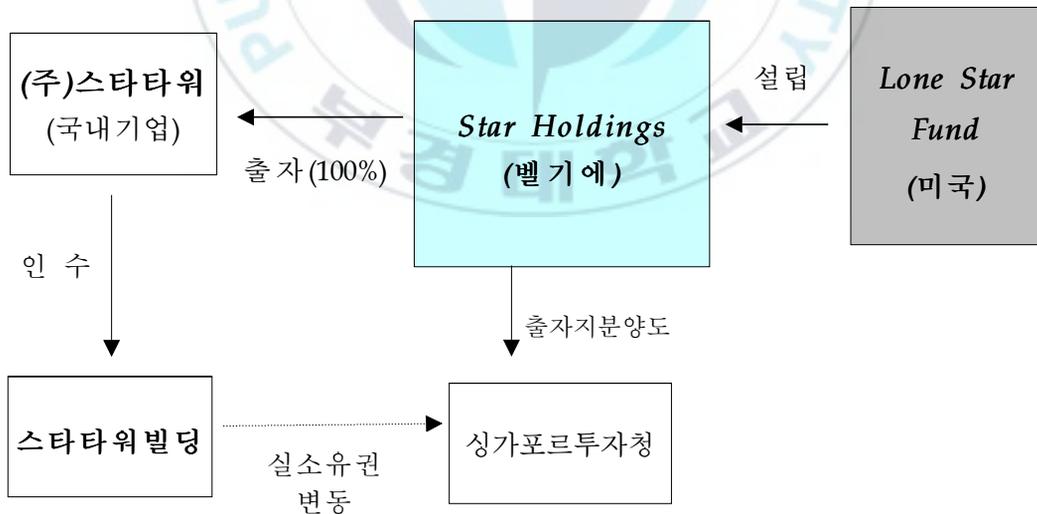
2. 스타타워 매각관련 주요 쟁점

가.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 및 매각 과정

2001년 6월 론스타펀드Ⅲ호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이용하여 국내의 부동산 법인인 (주)스타타워에 100% 출자를 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2001년 9월 (주)스타타워는 서울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빌딩(구 아이타워빌딩)을 6,2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IMF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2004년 12월에 (주)스타타워는 주식 100%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9,000억원 양도하고 2,800억원의 양도차익 실현한다.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와 매각에 대한 투자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스타타워 인수관련 거래 및 투자 관계



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2000년 IMF 이후 국내에 급속도로 유입된 외국자본은 제일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Newbridge Capital)에 매각된 이후에 외환은행이 론스타 펀드, 한미은행이 칼라일에 인수되었다. 이후 뉴브리지캐피탈은 5년 만에 제일은행을 1조 1천 8백억의 차익을 남겼고, 칼라일은 한미은행에 투자하여 3년 반만에 7천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시 4조원 이상의 차익이 남겨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적인 외국자본인 뉴브리지캐피탈이 2005년 1월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트(SCB) 매각하고, 서류상 본사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으로 돼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라부안을 역외금융지역으로 지정하고 라부안에서의 역외금융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tax haven)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뉴브리지캐피탈처럼 라부안을 통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말레이시아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 없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라부안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어 뉴브리지캐피탈은 양쪽 모두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들 외국자본의 고수익은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대량해고를 통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자 국내 여론은 악화되기 시작한다. 외국자본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에 따른 지나친 우대, 국내자본의 역차별 및 위축, 경영권 상실 등 우려가 경제분야의 새로운 논쟁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비판적 여론과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세청은 2005년 4월 12일, 론스타와 칼라힐, 골드만삭스, 웨스트브룩, AIG 등에 6곳의 주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2005년 9월 29일 6개월간의 세무조사를 마치며 국세청은 론스타에 1,400여

억 원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을 국내외 언론에 발표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론스타의 과세 근거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는 스타타워빌딩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²³⁾로써 론스타가 (주)스타타워 주식 및 스타타워빌딩 인수전부터 매각 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세회피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벨기에의 스타홀딩스가 국내 스타타워빌딩 소유주인 (주)스타타워 주식의 취득·관리·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벨기에의 거주자로서 한·벨기에간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만한 합리적인 사업 활동 및 자산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추징 근거이다.

스타타워빌딩 매입시 계약주체는 미국의 론스타였고, 매입대금도 론스타가 조달하여 미국에서 직접 송금하였으며, 국내 (주)스타타워 주식 및 빌딩 양도 관련 업무도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론스타의 법률고문, 파트너 및 국내 자회사가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세청은 매각의 실제 주체를 론스타 미국 본사라고 보고 부동산 관련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은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국 조세조약을 근거로 추징에 나섰다. 조세조약 남용행위에 대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한·미국 조세조약과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에 과세한 것이다.

2005년 10월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로 론스타를 고발하였으며, 2006년 2월 국회 재경위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헐값 인수 및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론스타는 검찰에 수사 진행 중이다. 2006년 3월 론스타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일자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23)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 직원이 1~2명 정도 상주하고 서류전달 등 간단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류상의 회사인 Paper company와 구별됨.

<표 5> 국세청의 세무조사 일지

2005.04.12	국세청 론스타 세무조사 착수
2005.09.29	국세청 스타타워 매각차익 등 론스타 관련 1,400억원 추정 발표
2005.10월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대표 등 임원4명 검찰 고발
2005.12.14	엘리트 쇼트 론스타 부회장 국세청에 사과방문 국세청 일부금액에 대한 세금 고지서 발송
2006.01.14	론스타 해명자료를 통해 법인세 납부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최대한 노력 입장 표명
2006.02.06	외환은행 매각 실사 시작
2006.03.23	외환은행 매각 우선 협상자로 국민은행 선정
2006.03.24	쇼트 부회장 ‘세금 완납 약속한 적 없다’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스타타워빌딩 매각관련 1,000억원과 구조조정펀드 등 투자관련 400억원)

다.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

스타타워 관련한 국세청과 론스타 간의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세주체를 스타타워 소유법인인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로 볼 것인지, 미국의 론스타 본사로 볼 것인지 여부이며 이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둘째, 스타타워 건물이 아닌 스타타워 소유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것으로는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차익이 아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여부이다. 이를 위해 론스타와 국세청의 입장차이와 근거규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론스타 주장

1) 주요 쟁점 및 관련 근거조항

론스타의 주장을 쟁점별로 요약하면, 첫째, 과세주체가 (주)스타타워의 100% 출자법인은 벨기에 국적의 스타홀딩스이며,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론스타 미국 본사를 매각 주체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 즉 매각주체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이므로 한·벨기에간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스타타워 건물이 아닌 스타타워 소유 법인인 (주)스타타워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주식양도차익에 해당하여,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스타타워 매각차익은 비과세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의 주장에 불복하고 2006년 3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서 제출한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한·벨기에간 조세조약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한-벨기에 조세조약 중 주식 양도소득 관련 조항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3 조 양도소득

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계약국의 기업이 타방계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계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왜 벨기에인가?

벨기에는 수도 브뤼셀(Brussels), 면적 30,519km² (경상남북도 크기)의 좁은 국토, 서울보다 적은 약 1,015만명 인구로 유럽의 작은 연방국가이다. 이러한 부존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자유무역, 가공공업, 중계무역(총무역의 68%)이 발달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세계 9위의 무역대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자체시장 협소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으므로 대외경제 변화에 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과 다국어 사용국가로서 행정비용 과다 지출이 주요원인이 되어 EU국가 중 재정사정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꼽힌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EU 국가와 미국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다이아몬드·자동차·의약품·용단, 수입품은 기계류·화학제품·금속·금속제품·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이다. 벨기에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전후로 최초로 투자조사단을 파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작은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30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벨기에의 17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외교는 1892년, 벨기에와 한국(당시 조선)은 외교관계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1900년 초대 외교사절인 레옹 뱅가르(Leon Vincart)가 부임하여 이듬해인 1901년 3월 23일에 양국 간 첫번째 조약에 합의하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8년, 벨기에는 주한공관을 철수시켜야만 했으나,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수립과 동시에 첫 번째로 한국을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51년 1월 31일 벨기에는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서 보병 1개 대대가 참전(연인원 3천명, 전사자 106명)하였으며, 그 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입장을 지지하여 온 전통적 우방국이다. 1950년대 이후 한국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시작하자, 벨기에는 기술이전, 교육협력, 원자력 개발, 전화 및 통신시스템, 항만 개발 등 국가 개발 사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벨기에와 한국은 포커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합작 기념사업을 수행한바 있다.

한국의 대벨기에 수출은 2002년 8억불(4.5%), 2003년 12.95억불(61.9%), 2004년 14.3억불(10.9%)로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박,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요 5개 품목의 수출 비중이 총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2004년 5월부터 월 수출액이 1억불을 초과하여 벨기에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품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한국의 대벨기에 수입은 2002년 6.4억불(12.4%), 2003년 7.68억불(19.4%), 2004년 9.1억불(18.7%)로서 주요 수입 품목은 철강관(13%), 정밀화학원료(11%), 농약 및 의약품(6%), 석유화학 합성 원료(6%), 합성수지(5%), 물류(5%)이다.

1977년 8월 29일 브뤼셀에서 우리나라와 벨기에간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1994년 4월 20일 이를 개정한 바 있다.

벨기에의 조세구조는 법인세 기본세율은 33%이며, 법인 거주지의 결정은 주된 사업장 또는 관리 중심지가 소재한 위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설립지가 외국인 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장 또는 관리 장소가 벨기에에 소재한다면 조세 목적상 벨기에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거주 법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만, 벨기에 국내 법인이 해외로부터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주식양도차익)이나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를 가지고 있어 95%가 수익에서 공제되어 법인소득세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주식의 소유기간(holding period condition)에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면제(95%)받기 위해서는 주식 참여지분이 최소한 5% 이상 또는 125만유로(5천만 벨기에 프랑)에 해당하는 취득가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자원이 부족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소규모 연방 국가

들은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관대한 과세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3국기업의 우회투자 거점으로 이용되어 순수 자국의 기업투자보다 우회투자 프로젝트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론스타가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투자를 위해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스타홀딩스와 LSF-KEB Holdings SCA의 주식양도 차익은 벨기에에서 95%의 소득면제를 받고 단 5%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2) 국세청 주장

첫째, 매각주체의 형식은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 스타홀딩스의 투자지만 실체가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미국 론스타 본사가 운영 및 매각을 주도하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합리적인 사업 활동과 자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나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는 합리적인 사업 활동과 거리가 먼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것이다. 이에 의해서 실제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빌딩매각의 이익을 가진 미국 론스타 본사의 투자자(파트너)에게 과세하였다.

둘째, 한·미 조세조약상 스타타워의 경우처럼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인 외국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 한·미 조세조약 15조에는 부동산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주식의 양도차익 일지라도 해당법인이 (주)스타타워처럼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²⁴⁾

24)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의하면 주식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문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법에 의해 미국 내 법인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인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Treaty Override라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응하여 2001.5.23 재정부 예규에 의해 한국도 그러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밝힌바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도 양해하였음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스타타워의 매각주체를 미국의 론스타 본사로 보아 과세한 근거조항인 한·미국 조세조약은 <그림 4>와 같으며, 세부 내용으로 미국과 쌍방 양해한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2001년 5월 23일 <그림 5> 재경부 예규다.

<그림 4> 한-미국 조세조약 중 주식 양도소득 관련 조항

제15조 【부동산소득】

- (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소득과 동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계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제16조 【양도소득】

- (1) 일방계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계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a)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b)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인 동소득의 수취인이 타방계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그림 5> 재경부 예규

< 재경부 예규 재국조46017-89, 2001.05.23 >

미국의 거주자의 국내의 기타자산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5조 제1항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협약 제15조 부동산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제16조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²⁵⁾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²⁶⁾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²⁷⁾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²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25) 제119조 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6)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7)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8)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주)스타타워 및 스타타워빌딩 인수전부터 매각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세회피 계획을 작성해 실행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벨기에 국적의 스타홀딩스가 (주)스타타워 주식의 취득·관리·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스타타워 빌딩 매입 시 계약주체도 미국의 론스타 펀드이며, 매입대금도 론스타가 조달한 미국에서 직접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라. 쟁점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 과세원칙 고찰

(1)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고찰

국세청의 론스타 과세에 적용된 주요 과세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명목상의 주체가 아닌 실제 소득을 향유하는 주체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세금을 추정하면서 벨기에에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가 아니라, 론스타의 미국회사를 매각주체로 간주하고, 한·미간 조세조약을 적용했다. 스타타워의 명목상 인수·매각 주체인 스타홀딩스는 주식 취득과 관리, 양도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서류상 회사의 일종인 도관회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론스타 본사가 있는 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에 의거 과세한 것이다.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자는 그 나라의 거주자인 인(person)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포함된다.²⁹⁾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하여 펀드 운용법인이 서류상 회사의 일종인 도관회사인 경우에

29) 우리나라의 내국법인 판정기준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회사법상 살펴보면 설립지법주의(Internal Affairs Rule)과 본거지법주의(Real Seat Rule)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나 의사결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설립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설립지에 성관이 없이 그 활동의 중심지이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곳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이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절충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해당함에 따라 조약 적용대상이 되는 거주자 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이다. 도관회사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실질을 찾아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법인격 부인의 문제로 요약된다.

실질적 귀속자와 형식적 귀속자의 불일치가 국제거래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관련 기업 간의 국내거래에서 일어났다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도관회사를 귀속자로 보지 않고 도관회사의 출자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법의 일반조항이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효력을 갖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둘로 나뉘는데 일부 학자들은 조세조약에 대한 제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다수의 학자들은 국내법의 일반 조항이 조세조약의 적용에도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대다수 견해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상 조약과 국내법은 일원적으로 하나의 법체계를 이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충돌은 통상 국내법 상호간의 충돌에서처럼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실질과세에 관한 일반조항을 조세조약과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고 조세조약도 국내세법 질서에 수용된 이상 실질과세원칙이 배제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OECD 모델 조세조약 1조에 관한 주석²²는 위와 같은 대다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바, 내용을 요약한다면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과 상호 충돌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1-22

Commentary on Article 1

22. Other forms of abuse of tax treaties(e.g. the use of a base company) and possible ways to deal with them, including “substance-over-form” , “economic substance” and general anti-abuse rules have also been analysed, particularly as concerns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rules conflict with tax treaties, which is the second question mentioned in paragraph 9.2 above.

22.1 Such rules are part of the basic domestic rules set by domestic tax laws for determining which facts give rise to a tax liability; these rules are not addressed in tax treaties and are therefore not affected by them. Thus, as a general rule and having regard to paragraph 9.5, there will be no conflict. For example,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referred to in paragraph 22 results in a recharacterization of income or in a redetermination of the taxpayer who is considered to derive such incom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taking into account these changes.

조세조약의 기본적 목적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중과세방지뿐 아니라 「조세회피와 탈세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관한 주석서 제9.4문단³⁰⁾은 「조약 체결국은 조세조약의 남용을 가져오는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조약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5문단³¹⁾에서 조세조

30) 9.4 Under both approaches, therefore, it is agreed that States do not have to grant the benefits of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where arrangements that constitute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ave been entered into.

31) 9.5 It is important to note, however, that it should not be lightly assumed that a taxpayer is entering into the type of abusive transactions referred to above. A guiding principle is that the benefits of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should not be available where a main purpose for entering into certain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was to secure a more favourable tax position and obtaining that more favourable treatmen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약 남용과 관련하여 지침이 되는 원칙(guiding principle)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어떤 거래나 약정체결의 주요 목적이 보다 유리한 과세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유리한 과세취급을 확보하는 것이 관련규정의 목적과 상치되는 것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은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9.6문단³²⁾은 특별한 조세회피기법이 파악되었거나 그러한 기법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회피 전략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방지규정을 조세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어느 국가의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나 원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에 이러한 구체적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동 원칙을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약남용 방지 규정은 오직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지닌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OECD의 입장과는 분명히 배치된다고 하겠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판례는 매우 적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혜택 적용을 부인한 1993년의 대법원 판례(93누 13162)³³⁾가 종종 인용된다. 또한, 국세심판원의 심판례

32) 9.6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general anti-abuse provision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need for the inclusion, in tax conventions, of specific provisions aimed at preventing particular forms of tax avoidance. Where specific avoidance techniques have been identified or where the use of such techniques is especially problematic, it will often be useful to add to the Convention provisions that focus directly on the relevant avoidance strategy. Also, this will be necessary where a State which adopts the view described in paragraph 9.2 above believes that its domestic law lacks the anti-avoidance rules or principles necessary to properly address such strategy.

33) 네덜란드와의 조약 제14조 제4항의 적용한 관한 사건. 동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경위와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는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계

(국심 2003전2994)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가공으로 설립하고 이 펀드의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후 동 펀드가 이자를 지급토록 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한편,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외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 판례법상 sham corporation 이론이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상 목적(business purpose)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활동(business activity)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원천지국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설립된 외국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조세조약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원칙 고찰

미국의 경우 2001년 부동산 과다법인(주식자산이 50%이상)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합의되었지만, 일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며, 예외조항으로 25% 이상 소유주주의 경우 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M&A시장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장악한 다음 매각차익을 실현하는 형태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25% 이하 지분에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며, 장내 거래로 주식을 파는 경우,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다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 국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국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 수행한 법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이에 회사가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조세조약' 소정의 네덜란드 국의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상장사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개별 자본의 단독 지분율이 25%를 넘는 사례는 몇몇 은행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게다가 주식거래의 경우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 간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관철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내 세법상 25%미만 지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주요 쟁점

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2003. 9. 26. 론스타 펀드 IV(U. S.), LP가 한국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별도로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SPC)인 LSF-KEB Holdings, SCA ('03.8.21 설립)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1.00%(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의 주주인 코메르츠 은행과 한국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65.23%)를 보유하고자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함으로써 외환은행의 실질적 법률적 소유주가 되었다.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관련 주요 승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규모

- 1) 주식수 : 325,851,715주(지분율 : 51.0%)³⁴⁾
- 2) Commerzbank · 수출입 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시 65.23%³⁵⁾

34) 주식취득규모

(단위 : 주)

신 주	구 주	소 계	구주 콜옵션	계
268,750,000	57,101,715	325,851,715	90,898,285	416,750,000
42.06%	8.94%	51.00%	14.23%	65.23%

35) Lone Star의 기존주주 보유 우선주에 대한 콜옵션

- 대상주식 : Commerzbank 41,764,077주, 수출입은행 49,134,208주
- 행사기간 : 3년(Commerzbank 보유주식중 취득원가 10,000원인 주식 26백만 주중 50%는 2년)

(2) 주식 가격

액면가 이하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방식으로 론스타가 취득하였으며,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4,000원, 구주 취득가격은 주당 5,400원이며 구주매입은 수출입은행 보유주식 30,865,792주, Commerzbank 보유주식 26,235,923주 매입³⁶⁾한다. <표 6>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당시 지분율 변동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표 6> 외환은행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현황

	주식취득 전(%)	주식 취득 후(%)	콜옵션 최대 행사시(%)
외국인 대주주	32.55	67.75	73.44
Lone Star	-	51.00	65.23
Commerzbank	32.55	14.75	8.21
수출입은행	32.50	14.00	6.31
한국은행	10.67	6.18	6.18
자본금*	18,509	31,946	31,946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미배당으로 의결권 부활한 우선주 7,400억원 포함)

36) 주식취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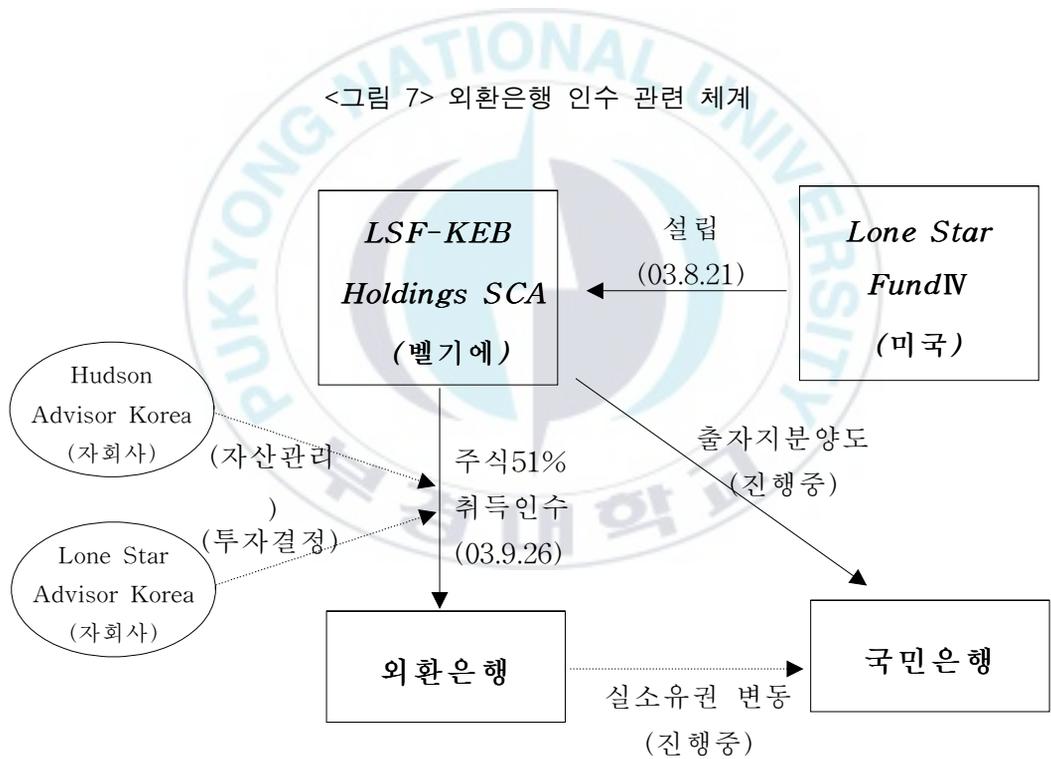
(자료 : 금감위)

구 분	가 격(원)	LS취득 주식수(주)	투자금액(비중)
신주 발행	4,000원	268,750,000	10,750억원 (78%)
구주 매입	5,400원	57,101,715	3,084억원 (22%)
합 계	4,245원	325,851,715	13,83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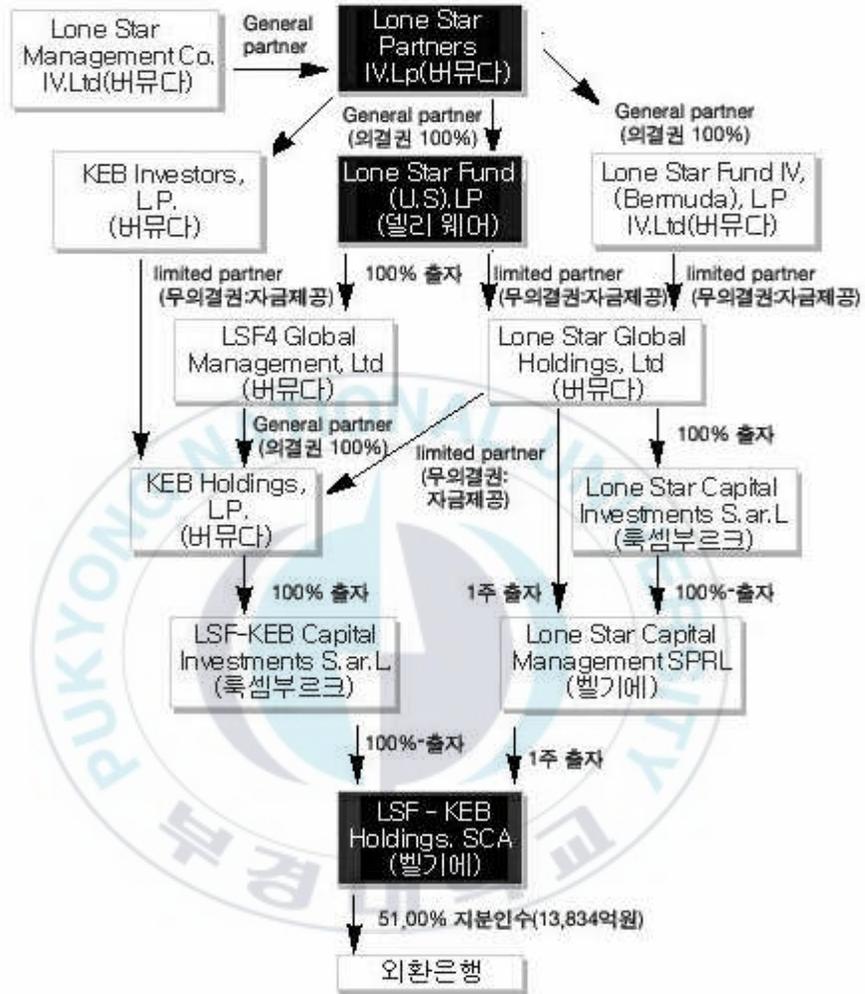
(3) 지배구조

- 1) Lone Star측에서 은행장 포함 이사 총수의 3/2이상 확보
- 2) Commerzbank,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서 사외이사 각 1명 추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하여 거래 및 투자관계와 관련회사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7>과 같으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설립한 LSF-KEB Holdings는 매우 복잡한 투자 구조를 <그림 8>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러한 투자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론스타 투자구조



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논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실제 매각주체가 미국의 론스타 본사와 한국내 론스타코리아 중 누구인가에 의해 외환은행 매각차익의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거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론스타 주장

론스타 코리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주된 사업장이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미국이나 벨기에에서도 과세하기 때문에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조세조약에 위반이라는 것이 론스타 관계자의 주장이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수차례 방한해 직접 매각협상을 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될 문제이다.

(2) 국세청 주장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론스타 코리아가 본사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보하고 있으며, 론스타 코리아를 론스타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의 25%인 1조원이 부과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및 세무전문가들은 이러한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를 상당수 확보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조세조약상 간주 고정사업장 충족요소 아래의 몇 가지 사실관계를 근거하고 있다.

①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

이에 대한 근거로 스티븐 리는 2003.1.1~2003.7.22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이사 역임했으며 2003.1.7~2004.3.25 스타타워 빌딩 10층에 사업장소 존재하였다.

②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 할 것

스티븐 리는 2003.1.1~2003.7.22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5개월 이상 역임하였으며, 외환은행 사외이사도 역임하였다.

③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것

스티븐 리가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작업 실질적인 수행을 하였다.

④ 종속대리인 요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를 대리하여 협상 진행했다는 관련서신을 확보하였다.

다.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과세원칙 고찰

현행법으로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실질과세원칙과 고정사업장개념이다. 이중 실질과세원칙은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하여 이미 고찰 하였으므로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외국 법인들이 초기 한국 투자 때 연락사무소 형태로 들어온다. 본격적인 영업활동·기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를 하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다. 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윤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법인이 많다. 형식적으로는 연락사무소로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활동과 이윤창출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제도”를 시행하였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라고 해도 실제 영업활동이나 이윤창출활동을 하면 국내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외국법인간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외국법인들이 연락사무소를 이용해 국내 사업장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적 접근이 중요하다.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 “간주고정사업장제도”라는 개념이 나온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자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이라도 이 같은 필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였던 스티븐 리를 론스타 코리아의 종속대리인으로 보고,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것이다.

라.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비교

외환은행 매각 건은 스타타워 매각 건에 비해 과세 근거가 약하다. 두 매각 물건이 모두 주식 매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스타타워 매각 건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적지 않은 반면, 외환은행 매각은 부동산 거래가 아닌 순수한 주식거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한국이 63개국과 맺은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일반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조세조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판정을 통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즉 론스타의 한국 거점인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면 법인세법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25%를 부과해 이익의 1/4인 대략 1조원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스타타워 매각 때 국세청이 적용한 과세논리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

스타타워빌딩의 직접적인 소유자인 스타타워(주)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가 100% 출자한 별도의 법인이나, 외환은행의 경우 한국 내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벨기에 법인이 소유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점에서도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건과 비슷한 출자구조를 통해 외환은행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외환은행의 서류상 주인은 벨기에에 있는 LSF-KEB Holdings이 듯, 스타타워도 벨기에에 있는 스타홀딩스를 통해 양수하였으므로 같은 맥락인 것이다.

스타타워 매각 건에 대해선 실제 매매주체가 벨기에가 아닌 미국 본사로 확정하여 과세했던 국세청이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진 외환은행 건에 대해 실제 매매주체가 미국이 아닌 한국지사(론스타코리아)라고 해석하여야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초 스타타워 매각 관련한 과세시 (주)스타타워를 법인세법 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간주하여 국내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실제 소유주를 미국의 론스타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과세를 위해서는 국내사업장보다 하위 개념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야만 국내에서 과세가 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 권한이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1)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지위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론스타의 한국 거점인 론스타코리아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면 법인세법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도 애매하다. 외국 편드가 굳이 우리나라에 고정된 시설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인력이 상주하면서 영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거래 기법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 굳이 물리적인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한국에서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각종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은 외국에서 한다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관련규정은 물론 국내 세법상 국내사업장 규정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론스타측은 고정사업장 문제에 대해 론스타코리아는 연락사무소 역할만한 것 이라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단순 심부름만 했고 본사와 벨기에 법인이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했기 때문에 과세 근거지는 미국이나 벨기에라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외환은행의 사외이사이자 론스타코리아 소속이었던 인물들(대표적으로 Steven Lee 등)이 외환은행 매입 작업을 주도하고 구조조정에 주도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차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검증될 부분이지만, 론스타 측에서도 이에 대해 미국 본사의 2

인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우선매각 대상자 선정과 계약 등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고비마다 입국했다는 점, 펀드의 운영상 굳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반드시 둘 필요도 없다는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주장은 다소 힘겹다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외국계 펀드회사에게 맞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연구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소득의 구분

2003년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의 경우는 론스타코리아가 간주 고정사업장이라는 걸 입증해 내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당시 일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론스타펀드Ⅲ의 부실채권 투자였는데 외환은행의 경우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반복적, 계속적 사업 활동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외환은행 매각은 일회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론스타코리아가 론스타펀드의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입증되어도, 과연 외환은행 주식의 양도차익이 론스타코리아의 사업소득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 쪽에서는 그것이 론스타코리아의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으로 생긴 소득이 아니라 일회성 주식 양도차익으로 사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권 배분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장이라는 걸 인정한다 해도 거기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된다.³⁷⁾ 론스타의 투자구조는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은 미국의 파트너쉽인 론스타의 각 국성원인 파트너에게 직접 귀속이 되므로 각 파트너의 거주지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37) 투자펀드를 look-through entity로 취급하는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펀드Ⅳ 투자자는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숫자는 최대 45명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인 실무상 각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국내세법상 명확한 과세단위가 아니고 법적 제도적 논의가 부족하다. 파트너십을 과세단위로 인정하지 않는 접근법(transparent approach)은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파트너십 소득의 투자자인 파트너 지분에 따라 각자 과세하는 방법으로 그 세무상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실질 주주에게 과세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정당하며, 한국 과세당국은 론스타 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토대로 각 투자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그에 따른 징수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한 수단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교환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외엔 구할 방법이 없다.

또한 론스타 자체를 과세단위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론스타 측에서는 투자자의 비밀 보호문제와 투자자 입장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론스타의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수령할 때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론스타가 다시 펀드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부할 때 펀드 차원에서 또 한 차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때 론스타가 적절한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 펀드투자자는 국제적 이중과세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투자자의 거주지국은 론스타가 행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뿐이지 한국에서 행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IV.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외국 과세 사례

1. OECD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대책

Treaty shopping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ECD는 1977년 모델조약 개정 시 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소득(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³⁸⁾」 개념을 채택하여 조약의 혜택은 소득의 단순한 수령자가 아니라, 진정한 수령자인 수익자에게 부여되도록 각 조항에 정하였다.³⁹⁾ 그 후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분석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OECD는 그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방식을 1987년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987년과 1997년 OECD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⁴⁰⁾

가. 투시접근법(Look-through Approach)

조약의 특혜를 향유하도록 하는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약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OECD 방식 중에서는 가장 철저한 대응방안이며, 조세피난처 등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점을 지니고 있다.

- 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
- ② 현행 OECD모델조약에 부적합하다는 점

38) 법적소유자(legal owner)란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수익적소유자의 개념은 영국 등 일부 일반법(Common Law)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법률용어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시민법(Civil Law) 국가에서는 수익적소유자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OECD 모델협약에 beneficial owner 라는 용어가 삽입되었으나 협약에는 동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불확정개념이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세전문가나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39) The OECD Model Convention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in Tax Treaties」, IFA, Vol. 23a

40) OECD,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OECD, 1987, p.95 이하 및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Issues in International Taxation, No. 1,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Double Taxation Convention and the Use of Conduit companies), 1997. November, p. 94이하 요약

- ③ 진정한 법인과 서류상 회사를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법인의 경우도 조세회피를 이용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
- ④ 집행을 위해서는 납세자로의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 ⑤ 모든 주식을 기명식으로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나. 조세혜택배제법(*Exclusion Method*)

조세 조약상 특정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을 비거주자로 보고 당해 조세감면 혜택을 배제시키는 방법이다. 실제 조약의 예에서는 지주회사, 투자회사, 국제사업회사 등을 제외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 방법은 거주지국에서의 당해 법인에 대한 과세여하에 따라 조약적용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판정에 있어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협력을 요하는 부담이 있지만 다른 접근방법과 비교할 때 단순 명료한 방법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징검다리 도관회사(Stepping stone conduit company)⁴¹⁾ 등 고도의 계획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다. 과세대상접근법(*The Subject-to-tax Approach*)

특정 소득이 도관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의 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방법은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세혜택배제법과 유사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기지회사(base company)⁴²⁾,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등에 대한 특권을 조약의 적용 제외로 할 수 있지만,

41) 도관회사의 일종으로 특히 우회상황이 중첩하여 여러 개의 우회회사가 재입되는 경우

42) 도관회사와 유사한 조세회피 목적의 회사지만 단순히 소득이 통과를 역할을 하는 도관회사에 비하여, 거래로 인한 소득을 통과시키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해외특수관계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과 관련됨

당해 법인이 소득에서 상계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구조를 이용하는 징검다리 도관회사의 고도의 계획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고, 나아가 경제개발 등의 목적으로 부여되는 조세지원(tax incentive)을 받는 법인까지 기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라. 통로접근법(The Channel Approach)

비거주자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고 경영권을 갖는 경우로서 동 법인 소득의 50% 이상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사용료·개발비·무형재산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도관회사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징검다리 도관회사에도 대항할 수 있어 더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즉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을 국외의 비거주자의 채무로 지급함으로써 원천지국의 과세베이스를 감소시킬 경우 조세조약의 특혜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통상의 사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별 없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술하는 “일반선의조항”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 일반선의조항(The General Bona Fide Provisions)

위에 설명한 방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의성실한 거래에 대하여 조약상 혜택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일반선의 조항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존립목적, 사업활동, 소득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의 취득, 관리에 있어 그 동기가 정당한 사유에 있고, 조약상 혜택의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해 법인이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혜택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각 방지책에 의해 진정한 경제활동에 대하여 까지 조약의 특혜가 부정되는 것으로 된다면 과도한 것이고, 조약 자체의 의의를 현저히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OECD는 진정한 경제활동에 조약의 혜택을 보증하여야 할 것이고, 방지규정의 적용제외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진정조항으로서 예시하고 있다.

- ① 활동조항(activity provision)은 당해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실질적 사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천지국에서 받고자 하는 세금감면이 그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혜택제한규정을 적용배제 하는 규정을 말한다.
- ② 세액조항(amount of tax provision)은 조약상의 감면청구액이 거주지국에 의한 과세금액 이하인 경우에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을 말한다.
- ③ 상장조항(stock exchange provision)은 거주지국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및 상장된 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 ④ 선택적 구제조항(alternative relief provision)은 조약당사국 일방의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에 의한 조약남용을 방지하고 있는 바, 제3국에 대하여 원천지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러한 조약상의 혜택이 조약당사국의 조약에 의하여 불리하지 않다면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의 동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3국의 거주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선택적 구제조항이다

2. 주요 선진국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노력

가. 미국

조세조약상 조약남용 방지규정으로서 특혜제한조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재무부 모델조약은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977년 재무부 모델은 「세액조항」이라는 선의조항을 정하였지만, 매우 간단한 규정이었다. 따라서 1981년 재무부 모델조약은 일반선의조항을 채택하고, 상장조항, 활동조항 및 세액조항 등의 선의조항으로 명기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1992년에는 구 모델조약이 폐지되고, 방지규정의 강화에 따라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의 부당한 향유를 저지하기 위해 OECD 접근 방식 중 투시관찰법으로 재검토되었다. 「일방 체약국의 거주법인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 또는 복수의 자(미국시민을 제외한다)에 따라 지배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소득, 수익 또는 이득에 대하여 다른 체약국에서 조세의 혜택을 이 조약에 근거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선의조항으로는 상장조항, 활동조항 및 세액조항이 명기되었다

1996년 개정된 모델조약을 보면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을 대폭 보완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즉, 제3국 거주자에 의해 지배되는 체약국 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와 실질적인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제3국 투자자가 조세조약을 남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세조약을 적용⁴³⁾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국 투자자가 조세조약 남용을 목적으로 체약국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거부한다.

그리고, 미국의 거주자,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세 회피 목적의 거주지 이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순전히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후 10년 간은 과세목적상 자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국적 포기 이전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43) 판단기준 중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정리하면 ① 체약국의 거주자인 공개법인과 그 공개법인의 계열회사는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② 공개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체약국의 거주자가 거주지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체약 상대국에서 취득한 소득은 그 교역이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in connection with) 있거나 부수적(incidental to)인 것이고, 그 교역이나 사업은 상대 체약국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과 상당한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나.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세법체계가 매우 유사한 국가로 2003년 론스타재팬에 대한 추징 등 유사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1) 2003년 론스타재팬 추징

주식매매로 인한 자본이득에 관한 면세에 관하여 일본이 체결한 조약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2002년 일본 정부는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를 잡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였고 일본회사의 부실자산에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2002년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2003년 론스타에 탈세로 세금 추징을 하였다. 일본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3년 7월 론스타가 일본에서 약 400억엔(한화 약 4,000억원)의 세무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세무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엔(한화 약 1,400억원)을 추징당했음을 발표했다. 론스타는 1997년부터 일본에 진출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약 6조엔(장부가격)을 투자했고, 파산 기업을 인수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전개하였고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골프장도 소유하는 등 각종 부동산에 투자한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론스타 일본 법인은 일본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등 투자대상을 찾기만 할 뿐, 실질적인 투자업무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에 활동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 법인’ 이므로 일본 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조세당국은 론스타재팬이 론스타의 계열회사를 통하여 자산가치평가 수행 등 부실자산 투자업무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참여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하여 도쿄 국세국은 론스타재팬과 그 계열회사는 론스타의 일본 내에서 직접 투자업무를 실시해 왔다고 보고 간주사업장이라는 법률을 적용하여 140억 엔의 세금을 추징한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론스타 펀드Ⅲ의 부실채권 투자였으며, 론스타재팬이 부실채권의 평가작업과 채권 회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론스타 재팬

의 과세 사례를 외환은행 주식으로 대입한다면 과세물건의 차이로 부실채권은 반복적, 계속적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외환은행 매각은 일회적이기 때문에 소득의 구분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01년 론스타가 4백억엔에 인수한 도쿄스타은행(구 도쿄쇼와은행)의 매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구조 측면에서 외환은행 사례와 가장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불투명하다.

(2) 리플우드 투자 및 신세이 조항

일본의 해외투자자본의 과세 노력의 새로운 계기는 신세이은행에 대한 리플우드의 투자이다. 신세이은행은 1998년 도산한 일본장기신용은행으로 일본 정부가 800경엔의 재정지원을 한 후, 2000년 미국계 투자그룹인 리플우드 지주회사에 11.4억 달러에 매각되었다. 리플우드는 네덜란드에 각 투자자별로 분리된 별도의 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일본 내에서의 투자기구는 네덜란드 법인들의 조합원인 투자조합이다. 투자조합은 세금을 내지 않는 재정적으로 투명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일본회사의 주식매매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면세된다. 리플우드 투자그룹의 조합원들은 GE 캐피탈, Mellon bank, Paine Webber, ABN Amro Bank, Deutsche Bank, Citigroup 및 Bank of Nova Scotia였다.

매각 1년 후 신세이은행은 2001년 순익 7.4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하였고 2004.2월경 리플우드는 32%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IPO를 완료하였는데, 리플우드는 은행 전체 매수가의 2배인 22억불을 받았으나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2005년 3월, 리플우드는 기관투자자 그룹에 은행지분 40%를 30억불에 매각하였는데 여전히 은행의 28%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 남아있다.

리플우드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한 비과세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투자조합(kumiai)에 대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신세이조항”을

입법화 한다. 2005.4.1 발효된 신세이조항은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의 모든 조세피난처를 포함하여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회사들의 외국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조세 부담을 야기하게 된다.

일본 세법 하에서 자본이득은 ㉠매도인 보유 증권의 총량이 지난 3년간 일정 시점에 회사 총발행주식의 최소한 25%이거나, ㉡일정연도에 매각된 주식 총수가 최소한 그 회사 총자본의 5%이상인 경우에만 일본 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25/5% 룰에 의거한 산정시 포함하나, 투자조합은 계산단위로서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은 별개로 25/5%룰을 계산한다. 그러나 신세이 조항은 25/5%룰을 산정하는데 있어 투자조합을 적용 가능한 단위로 취급함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보유한 증권을 통합한다.

외국투자자들이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법인이고, 모든 조세조약이 주식매매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지만, 조합원이 조세피난처 관할이나 또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한다면 조합원 보유분을 통합하여 25%이상 및 특정연도 5%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면 일본 내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리플우드 사례의 경우 조합원 중 어느 하나가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런 조합원은 20%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세이조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건은 일본 내의 투자조합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비거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배당후 20%의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이다.

신세이 조항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두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메이저 해외사모펀드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다.

(3) 미·일 조세조약 개정

미국과 일본은 일련의 이러한 외국자본의 과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세조약을 개정한다. 이는 2년간 협의 후에 2003년 11월 경에 서명되어, 2004년 3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리플우드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세면제에 관한 조세조약 자체는 발효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간 新조세조약은 납세자의 세금에 의하여 실질적 재정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있어 유사한 조세면제를 다소나마 예방하고, 新 조세조약은 공적자금을 받은 모든 부실회사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⁴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新 조세조약은 미·일 양국의 조세협력을 강화와 부적격 개인이나 법인의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약속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아래 규정을 신설한다.

1) 조세조약의 혜택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⁴⁵⁾에만 허용된다.

2) 거주자는 자국내에서 실질적인 교역 또는 영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그 교역 또는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개정된 미·일 조세조약은 신세이 은행과 관련한 리플우드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조세조약의 혜택을 진정한 거주자로 제한하여 Treaty shopping 방지를 통한 양국 정부의 조세당국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44) 개정 미·일 조세조약 14조

정부가 자국의 도산, 파산 금융기관에 실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 그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위 금융기관의 주식매매로 비거주 투자자들이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i) 재정지원이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ii) 비거주 투자자가 2004. 3. 30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따라서, 신 조세조약은 리플우드 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45) 특정요건의 거주자는 아래와 같다.

i) 모국에 거주하는 개인
ii) 증권거래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회사
iii) 수익자들이 어느 일방 국가의 거주하는 자가 50%이상인 연기금펀드
iv) 주식 50%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주자

다. EU

(1) 영국

공적자금투입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외국자본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 그 이익의 원천이 국민적 부담이었으므로, 시세차익에 대해 특별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그 수익은 이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근거에서 영국은 초과이득세를 (Windfall Tax)를 도입한다.

영국에서는 투기적 이윤에 초과이득세(Windfall Tax)를 도입했는데, 이법은 1997년 7월 2일자로 시행되었다. 영국정부는 국영기업들이 민영화 될 당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보고, 해당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부과했다. 1980년대 민영화되었던 수도, 전기, 공항, 가스, 전화 등을 포함한 30개 기업이 세금 부과 대상이며, 당시 이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회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영국 정부는 초과이득세를 통해 지금까지 95억 달러를 징수했다. 지금도 영국정부는 2004년도에 기록적인 수익을 낸 정유회사 및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 AO) 제42조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 기본구조는 어느 행위가 이상하며, 동시에 오로지 과세상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경우에 그 회사를 법의 남용(abuse of law)으로 고려된다. 이 규정은 과세상 유리한 제도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상 이유에 더하여 하나 이상의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의 남용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법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계획은 과세상 부인되고, 그와 같은 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이 통상 과세가 행해진다.

독일은 OECD모델조약에 준거하여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가진 국가이며 조세기본법 제2조에 의해 조약의 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지

만, 조약의 적용 후 적용되는 국내법은 조약의 규정에 우선한다(연방조세재판소(Bundesfinanzhof, 1995).⁴⁶⁾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거주법인(중간회사)은 조약상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조세남용 방지대상이다.

- ① 중간회사가 소득의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아닐 것
- ② 중간회사의 주주(수익자)가 조약의 특혜를 향유할 수 없을 것
- ③ 중간회사의 이용에는 경제적 기타 중요한 이유가 없을 것
- ④ 중간회사가 사업을 행하지 않을 것

독일은 거주지 이전을 통하여 국내과세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대한 방어조치로 대외조세법에서 제한적 납세의무자를 확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독일의 무제한 납세의무자였던 자연인이 거주지를 저세율 국가로 바꾸면서도 동시에 독일국내와 상당한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적용하는데 이 조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들은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소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3) 토빈세와 통화거래세

토빈세는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소득으로 제3세계의 민중을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달리 통화거래세(스펀세)는 무역거래에 동반하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0.005%~0.0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외국자본의 공격으로 환율 변동 폭이 급변 할 경우 50%~8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환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통화거래세는 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되었는데, 1999년 3월 캐나다 의회가 입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2004년 벨기에와 프랑스 의회가 스펜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적극 검토 중이다.

46) EStG §50d(1a).

V.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최근 과세관청의 대응방안과 법률 개정

론스타 사태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투기목적일 가진 외국자본의 과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을 크게 조세조약 측면과 내국세법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가. 조세조약 개정

우리나라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로 취급되는 국가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발효('83. 1. 2)된 후 생겨난 조세피난처이다. 우리나라는 라부안을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02. 2월 한·말레이시아 조약개정협상을 제의한 이래 그동안 세차레의 회담을 가진바 있다. 이들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가 과거 영국, 네덜란드, 일본, 호주, 칠레 등과의 조세조약 개정 협상시에는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조약상대국의 요구를 수용했으므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라부안을 조세조약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말레이시아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말레이시아와의 조약개정 노력이외에도 우리나라정부는 최근 개정 또는 제정협상이 종결된 중국, 캐나다, 태국, 나이지리아 등과의 조세조약에서 조약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훨씬 낮은 세부담을 상대국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조약상대국이 말레이시아처럼 유해조세경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두었다. 또한 조세조약 남용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의 개정을 위해 최근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국가에 대해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 국내세법 개정

(1)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명문화

내·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피난처 등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06.5.2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국조법 제2조의2에 도입되는 실질과세의 규정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中 법률 제7956호, 2006.5.24 >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문의 규정을 기다려 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것이 학자들간의 일반적 견해이다.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 적용가능성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례상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있기에 이번 국조법 개정
명문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언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 발생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국세기본
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정될 것이
고, 국조법에 실질과세원칙이 규정된 후 발생하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동
법률상의 규정에 기초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국조법에 조세조
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규정
함으로써, 「국내 법률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조세조약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
는 문제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와 관련된 법적분쟁을 사전에 차
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
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조세피난처중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다른 지
역 보다 훨씬 조세조약 남용 대상 지역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로 우
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나 지역 중 외국계 역외펀드 등에
세금을 훨씬 가볍게 부과하여 조세조약 남용이 자주 발생된다고 평가되는 국
가나 지역이 몇 군데 존재한다. 비록 그 수효는 적지만 이러한 지역은 우리
나라의 국제조세제도 전체의 효과적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곳이므로
정부는 조세회피행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그림 10>과
같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2006. 7. 1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림 10> 법인세법 98조의 5

-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 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 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제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하는 회사나 외국펀드 등이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⁴⁷⁾한 후 3년 이내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의 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6월 이내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 이자를 함께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47) 이자·배당·사용료소득 : 지급자가 지급액의 25% 원천징수, 유가증권 양도소득 : 증권회사 또는 양수자가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 원천징수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세부담이 적은 국가를 이용하여 제3국의 투자자가 부당하게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 등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OECD의 유해조세경쟁방지 방향과 미·영·일 등 주요 선진국의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노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미국·독일·스위스⁴⁸⁾·캐나다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원천징수 특례제도는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완벽한 의미의 실질귀속자 판정문제는 경우에 따라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징수특례규정은 실질귀속자 판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safe harbor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운용이 곤란할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질귀속자 판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실질귀속자 의제규정’인데, 예를 들면 공모펀드의 경우와 같이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수백 명이 있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해당 펀드로 의제하여 간편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도입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원천징수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규정 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전에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48)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적·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스위스 자회사는 외국소재 모회사에 대한 과세당국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바로 적용.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해야 함. 만일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2. 외국자본의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책은 미국과 같이 정교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본수입국의 위치에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도모하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문제된 론스타 등 조세조약 남용을 이용하여 외국자본이 거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 남용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경우에는 투기적 요소가 강한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통하여 건전한 투자목적만을 지닌 외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로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망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과세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앞의 론스타 사례에서 분석했듯이 우리의 과세당국은 이러한 유형의 조세회피를 규율하기 위해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상의 과세근거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고정사업장 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조약 개정이나 내국세법 개정 등 조세정책을 개편 중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해외투자펀드의 대응 논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지와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효용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는 외국의 투자펀드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률 예측에 있어 우발채무적 성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요컨대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 조세정책은 외국자본의 유치, 내국펀드의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의 과세 중립성 확보문제 등 경제, 금융 정책 측면에서 폭넓은 배려가 필요하다. 단순히

조세회피방지라는 일면만을 중시해 과도하게 실질과세원칙에만 의존한다면 세법적용에 있어 과세당국의 자의성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세법운용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펀드에 관한 조세정책도 거시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건전한 국제조세 질서 확립”을 염두에 두고 해외투자펀드에 관한 기본 조세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해외 투자펀드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세제도 확립과 둘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에 참여 셋째, 국내외 자본의 중립적 조세환경을 통한 국내투자제고로 나누어 각 정책 방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추진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해외 펀드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세제도 확립

론스타의 투자처럼 해외투자펀드는 일반적 투자구조상 파트너쉽 (Partnership)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GP(general partnership),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일반적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트너쉽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 파트너쉽과 유사한 개념은 민법상 조합과 세법상 공동사업이 있다. 국내세법상 조합은 법인 혹은 개인으로 보며, 공동사업은 개인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쉽은 국내세법상 명확한 과세단위가 아니므로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한·미조세조약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파트너쉽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는 이러한 외국투자펀드의 법적 실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제도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투자에 따른 세후 투자수익률을 예측함에 있어 우발채무적 성격의 불확실성과 세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의 부재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내세법상 법인의 판단은 특히 형식주의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의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무엇보다 건전한 외국 자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금융기능의 국내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둘째, 각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조세조약 일반원칙인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을 허용하되 ‘펀드투자가에 대한 소득배분’을 투자펀드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수동해외펀드제도(Passive Foreign Investment Fund(PFIFF) Rules)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펀드투자가가 펀드차원에서 과세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이점을 악용,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 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동해외펀드제도(Passive Foreign Investment Fund(PFIFF) Rules)에 시행하여 펀드투자가에 배분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역외펀드를 포함한 외국의 각종 펀드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인 국내투자자에게 그 소득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의 배분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거주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펀드 소재지국(특히 역외금융센타)은 펀드투자가의 소득정보를 펀드투자가의 거주지국에 통보해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현재로서는 과세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해외 펀드에 대해서 그 거래의 사실과 진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외국계 펀드가 지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펀드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경우 그 실소유자 또는 투자구조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실행중인 거주자증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거주자 증명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적, 명목상의 회사일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배척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하여 앞서 제시한 수동해외펀드제도(PFIFF)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세조약 남용의 방지를 위한 각국의 조세조약에 특혜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1996년 미국 재무부 모델조약 또는 2003년 개정된 미·일조세조약의 특혜제한규정을 모델로 삼을 만하다.

미국의 상원은 특혜제한조항 없이 조세조약을 승인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조세조약에는 예외 없이 특혜제한조항이 규정되어 있고,⁴⁹⁾ 2003년 미일조세조약에서도 특혜제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미일조세조약 제22조). 조약의 특혜제한 범위는 ①적격자 기준, ②능동적 사업활동기준, ③권한 있는 당국의 개별인정기준에 의해 한정된다. 조약의 특혜로는 제6조 내지 제21조에서의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제23조의 이중과세배제, 제24조의 무차별금지 등이다.⁵⁰⁾

그리고 미·일조세조약은 특혜제한규정이외, 배당, 이자, 사용료 및 명시 없는 소득의 각 조항에 이른바 남용방지규정을 신설하고, 특혜제한과 더불어 제3국 거주자 등 본래조약의 특혜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의한 조약의 부정이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약특혜제한은 「자의 속성」에 착안하여 조약의 특혜를 부여하지 않지만, 남용방지규정은 「거래의 태양」에 착안하여 조약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미·일조세조약에서는 이른바 도관거래(back to back transaction)에 대하여 조약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한번 체결된 조약은 다시 개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조세조약 체결국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협상이 수년 동안 타결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여도 조세조약 남용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국과 공통의 해석·적용을 도모하는 것이 조약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실시 적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⁵¹⁾

49) 윤현석, “조세조약의 남용방지”, 조세학술논집 제22집, 2006, 255면 이하

50) 자세한 내용은 시내일호, 일미조세조약, 중앙경제사, 2004, 188면 이하.

51) 이태로, 앞의 논문, 37면.

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활동에 참여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국내 세법에 의존한 일반적 규제’ 나 ‘조세조약을 통한 양자적 규제’에만 의존한다면 외국투자는 우리의 금융시장을 떠나 조세상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나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금융시장만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회피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OECD 등 국제기구에 의한 제재방안이 확정된 후, 다른 국가의 공조 하에 제재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펀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권고안이나 지침을 제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는 물론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대해서 소위 유해조세실행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조세우대조치를 폐기하고 투자가의 과세정보를 거주국에 활발히 교환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국세청이 2006년 9월 14일~15일 양일간 OECD 국세청장 회의의 개최 등 종래의 OECD 유해조세실행 프로젝트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바꾸고 동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관계를 통한 다자간 공동대응임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서울에서 개최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발표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에서 국제적 협력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제적 조세회피가 심각한 문제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본 논문에서도 제시하였듯이 해외투자펀드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에 야기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무역·자본 자유화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시장이 보다 다양한 납세자

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국내세법의 집행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다각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법률적 수단을 통해 조세 회피 기법을 연구하고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전략의 확산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의 강화, 정보 교환에 장애가 되는 실무적 어려움 제거, 필요한 경우 역외 금융 센터와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 OECD 가이드라인을 갱신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등 국제적 차원의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 국내외 자본의 중립적 조세환경을 통한 국내투자제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과 자칫 국수적인 선입관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세중립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국내자본 및 외국자본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조세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금융발전의 촉진과 투자효율성 제고, 금융조달 능력 및 신기술 경로 확충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외국자본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로 인한 투자이익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외국자본 유입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투자펀드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조세경감혜택을 국조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건전한 해외투자펀드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과세 중립적 입장에서 내국펀드와 해외펀드 과세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은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강학상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바람직한 것은 외국계 펀드와 내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가 조세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질의 외국자본을 우대하고 투기자본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외국자본의 과세 논쟁의 중심에 있는 룬스타 사례에 대해 국내 투자 과정을 조세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룬스타의 스타타워 및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입장차이와 주장근거를 분석하고 외국자본의 투자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정책 방향에 대하여 3가지 방향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 투자펀드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세제도 확립. 둘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에 참여. 셋째, 국내외 자본의 중립적 조세환경을 통한 국내투자제고로 나누어 정책 방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추진 제안하였다.

국제간 거래를 행하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거나 조세회피차원에 이루어진다면 과세관할권이 2개국 이상인 관계로 이들 국가 중 최소한 한 국가는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국제적 조세회피에 의한 세수감소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 및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상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는 한 국가만의 세수감소라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조법 제정 이후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방안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자본 수출의 초기단계에 있고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시장의 진출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영위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세제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해외경쟁력의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자본을 적극적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외국자본이 최대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기업의 조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세법상 구체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의 도관국가로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자본이 국내 투자자본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조세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외국자본이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질의 외국자본이란 실제로 자본이 유입되고, 기술을 수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본”(IMF 부총재, 어거스틴 카스텐스)⁵²⁾이다. 결국 양질의 외국자본은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외국 자본 중 일부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기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 서류상 회사를 통해 범망을 우회하는 자본을 선별하여 과세하는 합리적 조세정책이 요구된다.

52) 2003.11.7 IMF가 미 워싱턴에서 개최한 경제포럼 “자본이동 사이클”에서 밝힌 내용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세청, 국제거래조사실무편람, 2006.
- 국세청, 보도자료, 2005~2006.
-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2005.
- 국세청, “서울선언”,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2006
- 국세청, 지식관리법령정보사이트, 개정법률해설, 2006.
- 김용기, “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김재진·홍윤식,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 고형식,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과세”, 투기자본감시센터 국회토론자료집, 33-49, 2005.
- 노동사회연구소,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법”, 2006
- 안중석·최준욱, “국제조세의 회피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안창남, “외국계 펀드의 규제와 조세조약”, 조세학술논집 제21집 제2호, 2005.
- 오윤, “금융거래와 조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3.
- 윤현석, “조세조약의 남용방지”, 조세학술논집 제22집 제1호, 2006.
- 이경근, “투자펀드를 이용한 국제투자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세무사, 55-76, 2004. 9.
-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3.
- 이태로, “Treaty Shopping”, 조세법연구 I, 세경사, 1995
- 이한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재정경제부, 2005.
- 재정경제위원회, “제258회 국회 임시회 문서검증 결과보고서”, 2006.
- 한성수,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 세경사, 2004.
- KOTRA, “벨기에의 대기업 조세제도”, 2003.

<국외문헌>

- Andrew Lymer · John Hasseldine,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 Bächle Rupp, Internationales Steuerrecht, Schäffer Poeschel, 2002.
- Charles H. Gustafson · Robert J. Peroni · Richard Crawford Pugh,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st Group, 2001.
- Gauthier Blanluet · Philippe Portier, Investment Fund, IBFD, 1996.
- IBFD,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IRS Reg 482, 2004
- Morgan Stanley, Overview of Private Equity Fund—from the Tax Policy Perspectives, 2006.
- McDaniel P. R. · M. J. McMahon · D. L. Simmons,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 Foundation Press, 1999.
-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 An Emerging Global Issue, OECD, 1998.
- _____,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OECD, 1987.
- _____, Tax Evasion and Avoidance : A report by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1980.
- _____, The OECD's Project on Harmful Tax Practices : The 2001 Progress Report, OECD, 2001.
- _____, Towards Global Tax Co-operation, OECD, 2000.
-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Issues in International Taxation, No. 1,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Double Taxation Convention and the Use of Conduit companies), 1997. November.
- Ramon J. J, The Impact of State Sovereignty on Global Trade and International Taxation, Kluwer Law, 1999.
- Sperl R. A, "The Taxation of Companies in Switzerland",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8.

The Problems and New Policy Directions on Taxation of Capital
Gains Realized by Foreign Investors:
The Case of Lone Star

Moon, Geunna
Major i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creasing flows of huge amounts of capital into multinational enterprises representative private equity funds, cause of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economies accelerated rapidly after IMF. It is a significant issued that international non compliance about capital gains of national investment which using sophisticated cross border schemes and investment structures.

So The National Tax Service(hereafter NTS) had a tax audit to five foreign funds including Lone Star Funds for six month from April 2005, untill now it's been public criticism that Lone Star Funds taking capital gains from the Korea Exchange Bank(hereafter KEB). This study analyzes taxation of Lone Star Funds case which is representation of capital gains realized by foreign investor.

In advance, overview the process of Lone Star's investment in Korea. And then examined the result of the tax audit by NTS of which relation rules and regulation taking capital gains from the Star Tower building sale. NTS regarded U.S-based Lone Star Fund carried out virtual business activities in selling the Star Tower building, imposed taxes applied for the double ta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U.S. Hereupon examined the principal of substantial taxation and capital gain of stocks

in the double taxation treaty that is the important issue between NTS and Lone Star.

And after comparing each opinion about capital gain from the KEB sale, examined relation rule, Permanent Establish. And then expecting a direction of taxation in the KEB sale. It grasps a problem point of taxation in foreign capital gain, get the current events point of major industrialized nation. And than Reaching to lead with direction and solution policies that lower 3 branch and accomplishing the detail for each policies.

First, establishing of reasonable tax policies about treaty shopping and tax evasion for foreign funds. Second, improving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revenue authorities in order to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Third, Promotion of the domestic investment caused by neutral taxes environment of domestic, outside capital.

